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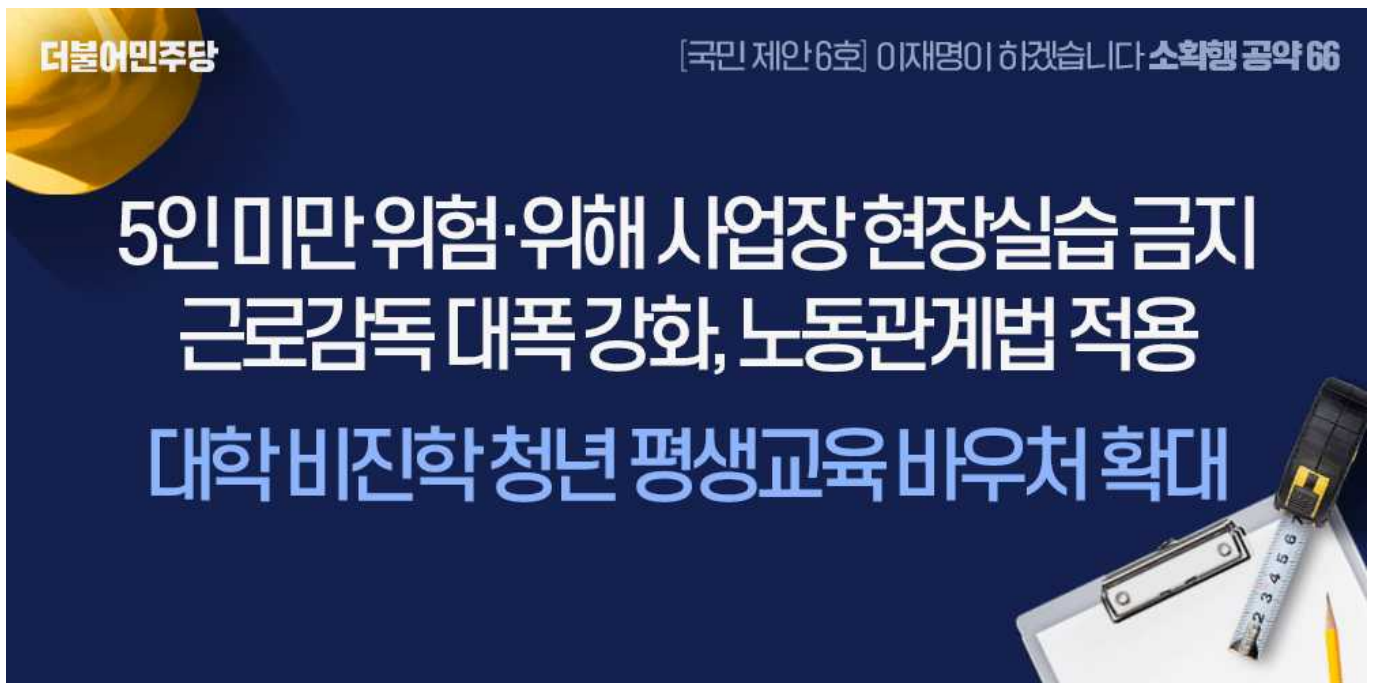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6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하게, 대학 안 가도 든든하게”

‘직업계고 학생 안전 대책 및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공약 발표

- 이재명, ‘다양한 꿈 찾는 청년을 위한 약속’ 공약 제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산재 문제, 대학 비진학 청년 어려움 조명
- 직업계고 학생 실습 참여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노동관계법 적용 추진,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 실습 금지, 안전·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 관련 공약 제시
-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학습계좌제 연계 통한 체계적 학습 지원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66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제안 6호로 ‘직업계고 학생 안전 대책 및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잇따라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안전 문제와 대학 진학이 아닌 생활인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대학 비진학 청년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공약 소개에 앞서 작년 가을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현장 실습

생의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체의 대표가 관련 자격도 없는 고3 현장 실습생을 잠수 작업에 투입했고, 결국 작업 도중 숨졌다. 당시 사고에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의 추모가 이어졌으며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후보는 “현장 실습생이 노동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밝혔다.

먼저 현장 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제외된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실습을 금지하고, 안전·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장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비롯한, 보다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공약도 함께 발표됐다. 이 후보가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현재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좌제 연계를 통해 학습 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현재 지원사업 또한 지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학 밖에서 꿈을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도 살피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설명자료]

□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및 권익침해 (교육부, '21.12.23.)**

- (산재빈도 감소) 학습 중심 현장실습 도입 이전에 비해 전체 산재 건수는 대폭 낮아졌으나, 지도·점검과정에서 권익침해* 건수도 상당수 확인

* 근무(실습) 시간 초과가 30건(40%), 부당대우 18건(24%), 성희롱 11건(18%) 등

연도	지도점검(순회지도 포함) 결과										산재건수			계 산재+권익 침해
	지도점검 건수	지도점검 평균횟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실습) 시간 초과	야간(휴일) 근무실시	계	산재 처리	산재 미처리	계	
2016	77,915	1.2	5(5%)	3(3%)	14(13%)	17(16%)	12(11%)	55(52%)	-	106	16	4	20	126
2017	84,817	1.8	1(2%)	0(0%)	3(10%)	4(13%)	15(47%)	9(28%)	-	32	15	5	20	52
2018	39,801	1.8	0	0	0	0	1(25%)	2(50%)	1(25%)	4	3	0	3	7
2019	45,727	1.7	0	1(2%)	1(2%)	6(13%)	8(18%)	23(51%)	6(13%)	45	6	2	8	53
2020	50,576	1.9	0	4(15%)	0	5(19%)	9(35%)	5(19%)	3(12%)	26	5	1	6	32

- (계열별·사업장 규모별 특징 분석) 산업재해('18~'20, 17건)는 공업계열(14건, 82.4%)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농생명(2건), 상업·정보계열(1건)에서 발생

※ 사업장 규모 : 5인 이하 2건, 5~30인 8건, 30~300인 6건, 300인 이상 1건으로 30인 이하가 59%

계열	'18~'20, 산업재해건수 (미처리 포함)				
	5인 이하	5~30인	30~300인	300인 이상	합계
공업	1	7	5	1	14
농생명	1	-	1	-	2
상업·정보	-	1	-	-	1
합계	2	8	6	1	17

- 권익침해는 상업·정보(34건, 46%), 공업(20건, 27%), 가사·실업(16건, 21%) 순으로 발생하였고, 상업·정보/가사·실업 계열에서 학생 수 대비 많이 발생

※ 사업장 규모 : 5인 이하 16건, 5~30인 40건, 30~300인 18건, 300인 이상 1건으로 30인 이하가 75%

계열	'18~'20, 사업장 규모별 권익침해 건수				합계
	5인 이하	5~30인	30~300인	300인 이상	
공업	2(10%)	7(35%)	11(55%)	0	20(27%)
농생명	3(75%)	0	1(25%)	0	4(5%)
상업·정보	3(9%)	26(76%)	5(15%)	0	34(46%)
수산·해양	0	0	0	1(100%)	1(1%)
가사·실업	8(50%)	7(44%)	1(6%)	0	16(21%)
합계	16(21%)	40(54%)	18(24%)	1(1%)	75

□ **현장실습 참여율** (교육부, '21.12.23.)

- 학습 중심 현장실습 도입으로 실습실시 기업수(선도·참여), 현장실습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증가하고 있음
 - ※ 현장실습 실시 기업수 : ('18) 9,527개 → ('19) 12,318개 → ('20) 11,737개
 -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 중도복귀율, 학생만족도도 개선되는 추세
 - ※ 현장실습 참여율 : ('18) 22.5% → ('19) 29.9% → ('20) 31.2%
 - ※ 전공적합도 : ('18) 99.2% → ('19) 99.6% → ('20) 99.4%
 - ※ 중도 복귀율 : ('18) 6.3% → ('19) 7.7% → ('20) 9.0%
 - ※ 학생만족도(5점 척도) : ('18) 4.6 → ('19) 4.7 → ('20) 4.7

연도	학교수 (3학년)	전체 학생수	대상 학생수 ①	참여 학생수 ②	참여율 (②/ ①*100)	현장실습 참여건수	전공 적합도	복교율	선도 기업	참여 기업
2016	593	108,968	106,151	60,016	56.5%	64,433	91.5%	11.5%		31,404
2017	588	103,922	101,251	43,026	42.5%	47,461	97.3%	17.4%		19,709
2018	582	101,239	97,680	21,948	22.5%	22,603	99.2%	6.3%	6,190	3,337
2019	576	91,161	87,471	26,124	29.9%	27,333	99.6%	7.7%	7,634	4,684
2020	578	79,956	76,766	23,938	31.2%	25,955	99.4%	9.0%	7,978	3,759

- (계열별·규모별 참여율 분석) '20년에는 수산·해양(50.5%), 공업(37.1%) 계열의 실습 참여율이 높고, 상업·정보계열의 참여율이 가장 낮음(23.3%)
 - 실습처 규모는 30~300인 규모가 가장 많고(39%), 300인 이상 규모가 가장 적으며(8.6%), 5~300인 규모가 전체의 76.5%를 차지함

구분	대상 학생수 (3학년)	현장실습 참여학생		참여율 (%)	현장실습처의 사업장 종사자 규모(현장실습 건, %)			
		취업전환			5인 미만	5~30인	30~300인	300인 이상
공업	36,872	13,676	10,223	37.1	1,694(11.3)	5,549(37.1)	6,604(44.2)	1,105(7.4)
농생명	4,603	1,452	975	31.5	411(25.9)	478(30.1)	565(35.6)	135(8.5)
상업·정보	27,638	6,429	4,906	23.3	1,192(17.3)	2,620(38.1)	2,283(33.2)	782(11.4)
수산·해양	730	369	297	50.5	51(13.6)	117(31.2)	144(38.4)	63(16.8)
가사·실업	6,923	2,012	1,456	29.1	517(23.9)	968(44.8)	535(24.7)	142(6.6)
합계	76,766	23,938	17,857	31.2	3,865(14.9)	9,732(37.5)	10,131(39.0)	2,227(8.6)

◆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현장실습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조항 중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시도 취업지원센터 인력 현황(교육부, 2021년 기준)

시·도	인력(명)	비고
서울	10	장학관1, 장학사1, 교사(파견)2, 취업지원관6
부산	5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취업지원관2
대구	8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5, 교사(파견)1
인천	7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교사1, 취업지원관3
광주	6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교사(파견)1, 취업지원관2
대전	9	장학관1, 장학사2, 주무관2, 교사(파견)1, 취업지원관3
울산	6	주무관1, 교사(파견)1, 취업지원관4
세종	6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1, 실무사1
경기	11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교사1, 취업지원관7(남부4, 북부3)
강원	4	장학사1, 주무관1, 취업지원관2
충북	5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취업지원관2
충남	7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교사(파견)1, 취업지원관3
전북	5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2, 취업지원관1
전남	7	장학관1, 장학사1, 취업지원관5
경북	12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교사(파견)2, 취업지원관7
경남	7	장학관1, 장학사1, 취업지원관5
제주	7	장학관2, 장학사1, 주무관1, 교사(파견)1, 취업지원관2
계	122	

□ 취업지원관(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

시·도	채용 현황			비고
	무기계약	계약직	합계	
서울	2	93	95	
부산	18	0	18	
대구	0	24	24	
인천	0	31	31	
광주	4	11	15	취업전담교사 8
대전	16	1	17	
울산	16	1	17	
세종	4	0	4	
경기	0	87	87	취업전담교사 80
강원	0	27	27	
충북	35	0	35	
충남	11	35	46	
전북	21	5	26	취업전담교사 5
전남	2	40	42	
경북	12	62	74	
경남	1	45	46	
제주	5	2	7	진로전담교사 5
합계	147	464	611	

□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사업 현황

1. 교육비 지원

사업명 ^{부처}	주요 내용	예산 (백만원)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지원 당시 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 (주요내용) 고졸 후 재직(경력 2년 이상) 중인 대학생(전 학년)에게 졸업 후 재직 유지를 조건으로 등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청년 후학습 장학금 확대('20년, 0.7만명→'21년, 0.9만명) 	36,98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인원 확대(8천명→15천명) 및 지원단가 확대(35만원→최대 70만원) - 사업 확대여부 결정을 위한 성과분석 추진(3/4분기) 	7,384

2.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안착 지원

사업명 ^{부처}	주요 내용	예산 (백만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업계고 학생 ○ (주요내용) 현장실습생(60만원)·기업현장교사(50만원) 최대 3개월 수당 지원,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20년, 2만 → '25년, 3만) 	34,60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주요내용)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20년, 4백만원 → '21년, 5백만원) 	133,000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부}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비진학 예정인 일반고 3학년생 ○ (주요내용) 고3 1년 또는 6개월 간 개인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참여(위탁교육),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지원 	54,067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취업 졸업자, 이직을 원하는 졸업자, 군 제대 졸업자, 후학을 원하는 취업자 등 직업계고(사업 참여 학교)를 졸업한 자 ○ (주요내용) 단위학교에서 졸업생 이력관리, 미취업·경력단절자 대상 취업연계, 취업자 근속 및 후진학 지원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 	1,750

□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사업 문제점

-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과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
- 교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임.

- 이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비진학 일반고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과정 또한 넓게 보면 교육비 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 훈련과정에 불과
- 결국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 비해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사업은 사실상 부재

■ 대안검토

□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확대

- 교육 공약에 포함된 ‘평생학습계좌제’ 신설시 대학 비진학 청년 대상 추가적인 청년학습계좌 신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 평생교육 바우처와 평생학습 계좌제 차이
 - 평생교육 바우처: 일명 평생장학금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한계
 - 평생학습 계좌제: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그 학습 결과를 이력화하고 학점제로 연동하는 국민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